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수신자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공개 청구 내용		
공개 결정 내용		
공개 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주) 소속기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고쳐 사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